

#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「후견등기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4976호, 시행 2019. 1. 1.)이 개정됨에 따라 「후견등기에 관한 규칙」의 관련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하도록 함(안 제32조의2 신설)
- 인터넷에 의한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함(안 제39조 단서)

## 4.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 조문 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후견등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2조의2(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)

-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 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”을 말한다.)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고, 전산운영책임관이 이를 담당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제1항에 따른 발급의 범위,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.

제3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이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

용한다. <u>〈단서 신설〉</u>	---. <u>다만, 인터넷에 의한 등기 사항부존재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무료로 한다.</u>
---------------------	---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
연락처

(02) 3480-1327